

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4. 19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7. 4. 23

다. 상 정 일 자 : 2007. 5. 7 (제1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
제1차 도시위원회 상정, 의견서 채택)

2. 제안설명 요지(건축과장 이희걸)

가. 제안사유

- 본 구역은 부산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·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함
- 이에 주택재개발을 통한 노후·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
나. 관련근거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
(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)

다. 정비계획 결정(안) 개요

- 위 치 : 사하구 괴정동 216-10번지 일원
- 면 적 : 40,018㎡(12,105평)
- 용도지역/지구 : 제3종일반주거지역, 자연녹지지역
- 신 청 자 : 괴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☐ 본 의견 청취의 건은

- 건축년도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·불량주택이 밀집한 부산 사하구 괴정동 216-10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
- 열악한 주거환경을 현대감각에 맞게 취락구조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
-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생애적이고 토속적인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필요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
- 특히 주택재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 되어있고 2005. 9. 21 부산시고시 제2005-267호에 의거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지정고시 되어있으며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므로

☐ 위 의견 청취의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

따라서 괴정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의견서 채택

붙임 : 의견서 1 부.

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
정비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의 건 서

1. 정비계획 결정(안) 개요

- 위 치 : 사하구 괴정동 216-10번지 일원
- 면 적 : 40,018㎡(12,105평)
- 용도지역/지구 : 제3종일반주거지역, 자연녹지지역
- 신 청 자 : 괴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

2. 청취안에 대한 의견

- 본 정비계획 구역은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·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었으므로
- 주택 재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건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다만, 주택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관련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임

2007. 5. .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